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6-01-14

대 법 원

제 3 부

판 결

사 건 2015도15197 공무집행방해
피 고 인 A
상 고 인 검사
변 호 인 법무법인 B
담당변호사 C, Q, R, S, T, U
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5노937 판결
판 결 선 고 2015. 12. 10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

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 게시일자 : 2016-01-14

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김용덕 _____

 대법관 박보영 _____

주 심 대법관 김 신 _____

 대법관 권순일 _____